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86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:2003.12.15
제출자:이만재의원의외 6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3년 12월 22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7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 동 목 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,
-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
-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안
- 평창군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
- 평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폐지조례안
-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3년12월 22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차재천의원, 고응종의원, 이수현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김영해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12.22(월)	제1차예결 (10:00)	1.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.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.평창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.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.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6.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7.평창군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.평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폐지조례안 9.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	